

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-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

교류 · 협력 협정서

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(이하 ‘양 기관’이라 한다)는 양 기관과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.

제 1조(목적) 본 협정은 양 기관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과 공동의 발전을 위한 각종 교류 · 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기본 원칙) 양 기관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 존중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.

제 3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류 · 협력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1. 교육 현안 사항에 대한 공동 논의 및 대응
2. 공동 연구 수행 및 세미나 · 정책포럼 · 심포지엄 등 학술회의 공동 개최
3. 각종 연구결과 · 자료 · 정보의 공동 활용
4.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· 시행
5. 신문·교육잡지 등 양 기관의 언론 매체에 상호 기사 게재
6. 양 기관의 상호업무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지원
7. 인적 교류 및 상대기관에 대한 자문요청
8.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협조

제 4조(재정 부담) 교류 · 협력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양 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부담한다.

제 5조(비밀엄수) 본 협정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상대 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제 6조(전담부서 및 실무위원회 구성) 양 기관은 제반 업무협력을 위해 전담부서와 책임자를 지정하고, 사안별 협력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7조(협정기간) 본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, 협정종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협력관계의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 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제 8조(협정의 변경 및 해지) 본 협정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. 단, 협정내용이 변경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도 상호 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그 사항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발생한다.

제 9조(보칙) 본 협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본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9월 2일



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
Korean Association of
Private Secondary School Principals



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
The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' Associations

회장 박재현
서명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, reading "박재현".

회장 하윤수
서명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, reading "하윤수".